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. 10. 25 선고 2022가단1113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0. 25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2019. 7. 3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20. 10. 30.
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9. 7. 31. 접수 제19094호로
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접수 2020. 11. 3. 접수 제29920호로
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함철환

별지